

#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발췌

소관부서: 경기도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[시행 2022. 1. 6.]

제24조(친환경기술 도입 등) ① 경기도에서 재정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용을 적용하여야 한다. 다만 연면적의 합계 면적은 냉·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.

1. 법 제16조 및 「녹색건축인증기준」 제3조 규정에 따라 녹색건축인증 우수(그린2등급) 등급 이상

2. 법 제17조 및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이상

3. 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른 신·재생에너지를 30% 이상 공급

② 연면적 3,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4등급을 인증받고 법 제6조의2 제2항에 따른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. [신설 2022.1.6.]

③ 공공건축물의 발주자(이하 “발주자”라 한다)는 제1항의 적용 외에 건축물 및 대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아래의 친환경기술 중 하나 이상을 적극 도입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,000제곱미터 미만의 공공건축물은 제1호에 따른 사항을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. [단서 신설 2022.1.6.]

1.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, 신·재생에너지(수소, 연료전지, 태양, 풍력, 지열, 바이오, 폐기물 등)를 이용한 설비 등 에너지절감 및 에너지자립 시설 설치

2. 물 재이용시설 및 빗물이용시설, 중수도 설비, 물사용량 모니터링 장치 등의 물 순환 설비 설치

3. 환경성선언 제품·저탄소 자재·자원순환 자재·유해물질저감 자재의 사용 및 재활용가능 자원 보관시설 등 자원순환 시설 설치

4. 투수성 포장, 옥상녹화, 지반녹지 등의 생태환경 조성

④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친환경기술을 도입하여 설계하는 경우 일반인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특색있게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, 현황판 설치 등을 통해 교육 및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25조(친환경기술 도입에 따른 설계비 지원)** 발주자는 설계자 또는 시공자에게 제24조의 친환경기술 도입에 따라 소요되는 인증비용과 증액된 공사비 비율에 따른 설계비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22.1.6.>

**제26조(의안제출)** ① 발주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제24조에 따른 친환경기술 도입 계획을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1.6.>

② 발주자는 제24조에 따른 친환경기술 도입이 건축물 및 대지의 특성과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하여 미반영할 경우 그 사유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위원회에서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친환경기술을 도입하지 않을 수 있다. <개정 2022.1.6.>

**제27조(위원회 설치)** ① 도지사는 공공건축물의 친환경기술 도입을 심의·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·운영 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담당하는 실·국장으로 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.

1. 도의회 의원

2. 녹색건축과 에너지, 물 순환, 자원순환, 생태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

3. 당연직 위원은 건축디자인과장, 에너지과장, 상하수과장, 자원순환과장,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.

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⑥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, 간사는 녹색건축팀장이 서기는 녹색건축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.

**제2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**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등에서 제척된다.

1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(당사자가 법인·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) 또는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, 연구, 용역(하도급을 포함한다) 등을 한 경우

4.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등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해당 위원은 그 심의 등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.

**제29조(위원의 위촉 해제)**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나 그 밖에 위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위원 스스로가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6개월을 초과하는 장기연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5.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**제30조(위원장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에서 호선(互選)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31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,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참석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, 회의에 올리는 안건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심의안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25조제4항제2호

의 각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심의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회의안건에 대하여는 심의안건 소관업무의 과장 또는 팀장을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한다.

**제32조(사전검토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 충분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미리 관련분야 위원에게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이를 검토하고, 위원회 개최 시에 그 검토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.

**제33조(심의사항의 반영)**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라 제출된 공공건축물의 친환경 기술에 대하여 적합성과 경제성, 기술여건 등을 면밀히 심의하고 건물 특성과 여건에 따라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.

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제시한 대안을 적극 검토반영 하고, 반영 결과 또는 미반영 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**제34조(소위원회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수행이나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안건의 내용에 따라 7명 내외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은 위원이 한다.

④ 소위원회는 지명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.

**제35조(결과조치 등)** 도지사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입하는 친환경기술이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.

**제36조(수당 등)**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

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30조에 따라 사전 검토에 참여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전 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37조(포상)**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주민·민간단체·공무원 등에게 「경기도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**제38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 <2018.1.11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2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로 건축설계용역을 발주하는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### 부 칙 <2021.5.20.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 <2022.1.6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건축설계용역을 발주하는 신축 공공건축물부터 적용한다.